

(붙임 1)

「한국은행 인천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 운용기준」 주요 개정 내용

I 개정 필요성

- 통화정책국에서 프로그램 운용상의 리스크를 줄이고자 **지역본부별로 통일성** 있게 운용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여 통보*함에 따라 이를 반영

* 「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」 세부 운용기준 통보(금융기획팀-765, 2022.11.18)

- 또한 2022년 7월 운용기준 개정 내용의 보완사항을 추가 반영

II 주요 개정 내용

- 통화정책국에서 송부한 세부 운용기준 및 표준안에 따라 일부 조 순서 변경 및 수집항목 및 지원 제외업종 수정
- 인천광역시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을 지역전략산업 영위기업(A8)에서 제외하고 추천기업(A6)으로 추가
 - 인천광역시 고용창출기업 및 고성장기업의 경우 이차보전 대상으로 지역전략산업의 후순위지원이 되어 일반지원부문으로 지원되고 있음
- 「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제14조-2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(제17조-2)에 따라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증(뿌리기업 확인서)을 발급받은 중소기업을 소재·부품·장비 생산기업(A11)에서 제외하고 지역전략산업 영위 기업(A8)에 추가
 - 동 사업 육성을 위하여 지난 8월 운용기준에 추가하였으나 일반부문으로 지원이 미미하여 지역전략산업 영위 기업에 추가하고 지정증 외에 확인서도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을 독려

III 시행일

- **시행일 : 2023. 3. 1일(금융기관 대출취급일 기준)**
 - 시행일 전에 이미 취급된 대출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. 다만, 만기 등 변동 사유 발생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